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국민건강영양조사 정보와 보건의료 건강정보와의 연계·활용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자료 요청 및 제공받은 자료의 사용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자료 요청 목적에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추가함(안 제30조의2제1항).

나. 자료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추가함(안 제30조의2제3항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등”을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등에 연계·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30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 ----- ----- ----- -----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등에 연계·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 ----- ----- ----- -----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을 받은 기관	② (개정안과 같음)

	<u>또는 법인·단체</u> <u>등의 장은 특별한</u> <u>사유가 없으면 그</u> <u>요청에 따라야 한</u> <u>다.</u> <u><신 설></u>	<u>③ 보건복지부장관</u> <u>또는 질병관리청장</u> <u>의 제1항에 따른</u> <u>자료 요청은 목적</u> <u>에 필요한 최소한</u> <u>의 범위에서 이루</u> <u>어져야 하며, 제공</u> <u>받은 자료는 목적</u> <u>외에 다른 용도로</u> <u>사용하여서는 아니</u> <u>된다.</u>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02
----------	-------

발의연월일 : 2025. 6. 10.

발 의 자 : 안상훈 · 고동진 · 김소희
박덕흠 · 박성훈 · 백종헌
안철수 · 조경태 · 조정훈
주호영 · 최보운의원(11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상태 · 식품섭취 · 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 · 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자료 요청 목적에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추가함

(안 제30조의2제1항).

나. 자료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추가함(안 제30
조의2제3항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등에 연계·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0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u>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작성 및 조사·연구 등에 연계·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제1항에 따른 자료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u>

	<u>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u> <u>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u> <u>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u> <u>된다.</u>
--	--